



의안번호	제 2012 - 17 호
의 결 연 월 일	2012. 6. 18. (제42차 회의)

의
결
안
건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 주문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지1과 같이,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지2와 같이,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지3과 같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지4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제39, 40차 회의에서 확정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 심의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이를 시행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증권·금융범죄
- 지식재산권범죄
- 폭력범죄
- 교통범죄

나. 양형기준의 내용

(1) 적용범위

- 적용 대상 개별 죄명
- 인적 적용범위
 -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

(2)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 기준표
- 유형의 정의
- 양형인자의 정의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공통원칙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다수범죄 처리기준

(3)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기준표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다. 양형기준의 적용시기

- 양형기준의 효력 발생 이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
- 다만, 양형기준의 구체적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필요

4. 별지

- 별지1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별지2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 별지3 : 폭력범죄 양형기준
- 별지4 : 교통범죄 양형기준

◆ 약어표 ◆

- 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부경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기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외감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 이행(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외감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외감법 제20조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특경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특경법 제5조 제3항),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특경법 제6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특경법 제7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금융기관 임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1) 제1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2항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1) 제1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2) 제2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감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외감법 제20조 제2항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 제1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6) 제6유형 : 수재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특경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특경법 제5조 제3항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

- (1) 제1유형 : 중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중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중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중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	특경법 제6조 제1항, 제2항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2)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특경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 범행과 독립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
- 증권·파생금융상품 시장을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손해배상청구 또는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 법인의 주요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임원, 외부컨설팅업자 등으로서 관련 정보의 생성·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범행하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

를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주식처분대금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회사 부채 변제에 사용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 벌금형의 선고로 인하여 환수되는 이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아.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경우
- 적대적 M&A의 비용 감소를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한다.

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범행의 대가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횡령 등)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범행
 - 유상증자 또는 은행대출 목적의 범행
 -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을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한다.

3. 금융범죄

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를 한 경우
 -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 증재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증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수재 후 알선행위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와 금융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

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 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 요구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융기관 임원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재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증재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는,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시세조종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특허법 제 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상표권·전용 사용권 침해(상표법 제93조), 저작권재산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 항), 저작인격권 침해·부정등록행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 저작권행사방해행위·침해간주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영업비 밀 취득·사용·누설행위(부경법 제18조 제1, 2항), 산업기술 유출·침 해행위(산기법 제36조 제1, 2, 3항), 비밀 누설·도용행위(산기법 제36 조 제5항), 부정경쟁행위(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위장·표지 등 사용행위(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등록권리침해행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 6월 - 3년

※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를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제2유형은 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부정경쟁행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등록권리침해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93조

2.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유형	1.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2. 부정등록행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제93조) 침해행위 3의1. 업 또는 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3의2. 업 또는 영리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	부경법 제18조 제2항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기법 제36조 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기법 제36조 제5항
제2유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누설	부경법 제18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기법 제36조 제1항

4.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 제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한다.

사.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여,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피고인이 산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 권리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피해 미변제 ○ 동종 누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 제3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2항),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존속폭행치상(형법 제262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존속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형법 제264조),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형법 제284조),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형법 제285조), 상습폭행·상습협박(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존속폭행·상습존속협박(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폭처법 제2조 제2항),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누범폭행·누범존속폭행·누범협박·누범존속협박(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호), 상습특수존속폭행·상습특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누범특수폭행·누범특수존속폭행·누범특수협박·누범특

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상해·보복목적 폭행·보복목적 협박(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보복목적 폭행치사(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운전자 폭행·운전자 협박(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운전자 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사·운전자 협박치상·운전자 협박치사(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 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 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폭행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1, 6, 7유형) ○경미한 상해(2,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2,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협박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이하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유형) ○경미한 상해(2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인 상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상해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처법 제2조 제2항
	보복목적 상해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제2유형 중상해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상습·누범·특 수상해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상습중 상해·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	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폭처법 제3조 제1항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유형 상습특수·누범 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	폭처법 제3조 제4항

3. 폭행범죄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제1유형 일반폭행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폭처법 제2조 제2항
	보복목적 폭행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제2유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운전자 폭행치상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보복목적 폭행치사	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상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운전자 폭행치사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제6유형 상습·누범·특 수폭행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	형법 제264조
	상습폭행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존속폭행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누범폭행	폭처법 제2조 제3항
	누범존속폭행	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폭처법 제3조 제1항
	특수존속폭행	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폭행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호
	상습특수존속폭행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폭행	폭처법 제3조 제4항
	누범특수존속폭행	폭처법 제3조 제4항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보복목적 폭행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4. 협박범죄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제1유형 일반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폭처법 제2조 제2항
	보복목적 협박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운전자 협박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상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
제3유형 운전자 협박치사	운전자 협박치사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
제4유형 상습·누범·특 수협박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 특수협박	형법 제285조
	상습협박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존속협박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누범협박	폭처법 제2조 제3항
	누범존속협박	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폭처법 제3조 제1항
	특수존속협박	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협박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호
	상습특수존속협박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협박	폭처법 제3조 제4항
	누범특수존속협박	폭처법 제3조 제4항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보복목적 협박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 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

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 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통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또는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사고 후 구호조치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법 제3조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법 제3조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
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
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
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
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